

예산총칙

제1조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·특별회계 세입·세출예산 총액 및 회계별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.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세입·세출예산총액	일시차입한도액
합 계		7,420,046,295	222,601,389
일반회계		6,065,978,935	181,979,368
특별회계		1,354,067,360	40,622,021
공 기 업 특 별 회 계	공 기 업 특 별 회 계	317,122,026	9,513,661
	① 상 수 도 사 업	154,894,320	4,646,830
	② 하 수 도 사 업	162,227,706	4,866,831
	기 타 특 별 회 계	1,036,945,334	31,108,360
	① 의 료 급 여 기 금	408,373,159	12,251,195
	② 수 질 개 선	4,847,370	145,421
	③ 풍 영 정 천 유 지 용 수 공 급 사 업	340,294	10,209
	④ 하 남 3 지 구 도 시 개 발	1,339,295	40,179
	⑤ 택 지 개 발 사 업	224,392	6,732
	⑥ 교 통 사 업	30,058,721	901,762
	⑦ 광 역 교 통 시 설	2,654,707	79,641
	⑧ 학 교 용 지 부 담 금	27,775,284	833,259
	⑨ 산 업 단 지	13,103,674	393,110
	⑩ 중 소 기 업 육 성 기 금	59,337,810	1,780,134
	⑪ 도 시 철 도 사 업	283,098,311	8,492,949
	⑫ 소 방	205,792,317	6,173,770

제2조 세입·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“세입·세출예산” 과 같다.

제3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“해당 없음”

제4조 계속비사업은 별첨 “계속비사업(변경)조서” 와 같다.

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“명시이월사업조서” 와 같다.

제6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“22,213,805천원” 으로 한다.

제7조 일반 및 특별회계(공기업특별회계 포함) 지방채발행액은 “254,000,000천원” 으로 한다.
지방채차입한도액(기본한도)은 “205,200,000천원” 으로 한다.

제8조 「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제1항」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간 또는 타 비목에서 이용할 수 있다.

제9조 금회 추경 이후에 연말까지 내시되는 국고보조금, 지방교부세 등은 예산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(이월 포함) 이를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한다.